



2022년 노사 합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결과보고

관련근거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-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
 - 1호 :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

추진배경 및 목적

- (추진배경)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안전책무 강화 및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대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재정립
- (추진목적)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·경영을 반영한 개정방침을 노사 합동선포식을 통하여 공유·확산 추진

추진개요

- 일시/장소 : 2022. 12. 28(수) 09:30 / 대강당
- 참석자 : 공단 전 임직원
- 주요내용
 -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및 노사 공동 선언

관련사진



보고자 : 감사안전팀 윤 종 석